

5. 住宅供給에 관한 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7-159號 1997. 5. 16

주 요 골 자

가.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의 납입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을 받도록 하여, 일정공정에 도달했을시 중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므로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도금만 받는 사례를 방지토록 함.

나.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

- 수도권외의 지역에 대한 재당첨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청약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외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도록 하였고
-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기당첨자로 보지 아니하므로서 분양주택 신청자격을 주어 내집마련 기회를 부여하였으며
- 임대사업자의 사업용 임대주택은 주택소유로 보지 아니하므로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게 하였다.

다.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

- 시장·군수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시는 건설교통부장관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- 시장·군수가 당해 시·군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.

개정이유

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함.

주택회보